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19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3월 10일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혜련, 김희걸, 노승재, 박기재, 박상구, 성흠제, 송아량, 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○ 2022년 2월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의 열람실 남녀별 좌석 구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4조 단위시설의 기준 중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는 조문을 삭제 함. (안 제4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　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”를 “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”를 “이용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단위시설의 기준)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단위시설의 기준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열람실: 열람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. 다만,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.	2. ----------.---이용자----------.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